

# 예산총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4,300,000	17,229,000
일반회계	493,600,000	14,808,000
특별회계	80,700,000	2,421,000
공기업특별회계	28,300,000	849,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500,000	405,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800,000	444,000
기타특별회계	52,400,000	1,572,000
수질개선특별회계	4,029,000	120,87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56,000	64,68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566,000	16,98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351,000	70,530
주택사업특별회계	825,000	24,75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250,000	7,5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030,000	30,900
치수사업특별회계	2,580,000	77,4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050,000	151,500
대지보상특별회계	705,000	21,15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7,000	1,11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2,821,000	984,6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928,61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